

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4년 3월 5일
도시·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: 2024년 2월 21일
- 나. 제안자: 최세진 의원 외 10명
- 다. 회부일자: 2024년 2월 23일
- 라. 상정일자: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도시·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4.3.5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최세진 의원)

□ 제안이유

-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량통제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공사시행자에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통제 등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7조제2항)
- 나.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8조)
- 다. 맞춤형 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(안 제2조, 제3조제2항 등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교통안전법」 제3조

나. 협조부서: 교통행정과

다. 입법예고(2024. 2. 23. ~ 3. 4.) 결과: 의견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배금택)

가. 개정 취지

-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맞춤형 규정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 개정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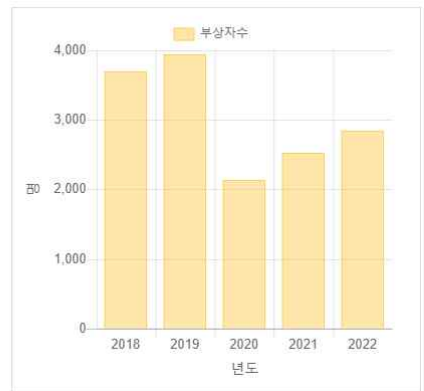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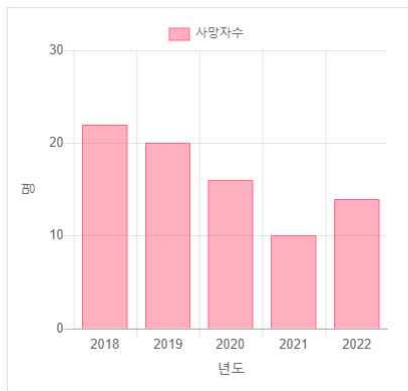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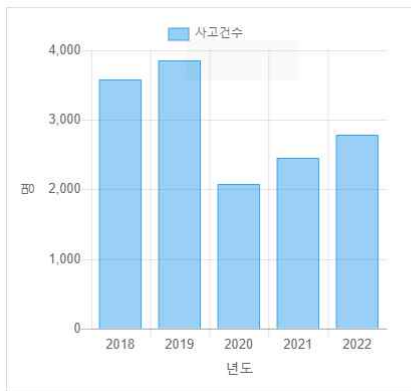
-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(안 제7조제2항)
 -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,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통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함.
-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(안 제8조)
 -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,
 -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해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,
 -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 시행을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.

다. 종합 의견

-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~2022년 5년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사망 82명, 부상자 1만 5,139명으로 나타남.

〈어린이보행자 교통사고-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〉

연도	사고건수(건)	사망자수(명)	부상자수(명)
2018	3,582	22	3,695
2019	3,856	20	3,942
2020	2,079	16	2,135
2021	2,451	10	2,529
2022	2,787	14	2,838



- 어린이는 노인, 장애인과 함께 대표적인 보행 교통약자로 구분되는데 특히 보호구역 내 통학로는 어린이들의 주 통행로일 뿐만 아니라, 등·하교 시간대에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만큼 다른 지역보다 세심한 관리가 요구됨.
- 이에 본 조례개정안은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, 관계 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 해당부서에서는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법령 1부.

□ 교통안전법

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국가등”이라 한다)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·교육·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.